

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내역서

- 건 명: 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 리모델링 공사(건축,기계(소방))
- 계약상대자: 주식회사 대명이십일 대표 김명회
- 계약 금액: 금712,097,000원(칠억일천이백구만칠천원)
- 계약 일: 2015. 8. 10.
- 준공 기한: 2015.12. 05.
- 선금신청액: 금356,000,000원(금삼억오천육백만원)
선금비율: 계약금액의 50%
- 검토 내역

연번	선금지급 조건	검 토 결 과
1	○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이 적정한가	○ 계약금액: 금712,097,000원 ⇒ 적정
2	○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	○ 기성금 지급 없음 ⇒ 적정
3	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여부	○ G2B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⇒ 적정
4	○ 선금요청적정요율: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하 - 공사(20억 원 미만) 선금의무지급율: 계약금액의 50%이상 -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	○ 선금지급신청율:계약금액의 50% ⇒ 356,000,000원 적정
5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1일 이상인지 여부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 선금지급 신청일: 2015.9.22. ~ 준공기한: 2015.12.05.(75일) ⇒ 적정

검토 사항 : 선금지급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급함이 타당함